

過勞死 認定 基準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南 槿 郁*

[事案의 概要]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1949. 9. 8. 생으로 1986. 12. 8. 진영운수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1998. 8. 4. 16:15경 자신의 집 앞에서 교대근무자로부터 영업용 택시를 인수하여 가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후송 도중 같은 날 16:40경 사망하였다.

나. 그 당시 진영운수 소속 운전사는 6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되 주간근무(04:00부터 16:00까지)와 야간근무(16:00부터 다음날 04:00까지)를 격주로 교대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는데, 망인의 월 근무일수는 22일 내지 26일이고 1일 영업운행시간은 10시간 정도이며, 당시 야간근무조로 편성되어 있었다.

다. 망인은 1995. 11. 15. 실시된 정기건강진단 결과 당뇨주의 판정을 받았고, 1997. 7. 15. 실시된 정기건강진단 결과 혈압이 140/90mmHg로서 종합소견이 정상이었으며, 1998. 7. 1. 실시된 정기건강진단 결과 혈압이 170/110mmHg로서 고혈압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었으나, 진영운수는 망인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내용을 경감시켜 주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망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2홉들이 1병 정도로서 자주 음주를 한 편이고, 흡연량은 1일 평균 담배 1갑 미만이었고,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심장의 관상동

* 大邱地方法院 判事

맥에서 석회화를 동반하는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 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경화 등에 의하여 심장 자체에 적절히 혈액이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심근의 괴사 등 허혈성 병변이 유발되는 질환으로서 동맥경화의 발생원인으로는 고지혈증, 고혈압증, 흡연, 당뇨병 등이 있고,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도 그 발생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관상동맥의 석회화는 고도의 동맥경화에서 주로 관찰되어 동맥경화가 심하거나 오랫동안 진행되었음을 나타내고, 관상동맥경화증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와 관련 없이 저절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될 수 있고, 단기간의 고혈압만 있는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혈압은 그 원인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일차성 고혈압이 95% 이상으로 가장 많고, 고혈압이 잘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가족력, 비만, 고령, 고염식 등이 있다.

2. 제1심(서울행정법원 2000. 11. 10. 선고 99구6575 판결) 및 원심(서울고등법원 2001. 6. 13. 선고 2001누 832 판결)의 판단요지

망인이 10여 년간 계속하여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이 심한 서울시내에서 1일 10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매 근무시 사납금을 채우고 나아가 수입금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무리한 운행을 하면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점진적으로 심장의 관상동맥경화를 촉진시켰거나, 기존의 고혈압 증세를 촉진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

고(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누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고혈압과 동맥경화라는 기초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혈압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불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동맥경화의 원인으로는 고지혈증, 고혈압증, 흡연, 당뇨병 등이 있으며,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도 그 발생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고, 또한 망인의 택시운전사로서의 업무가 사망 직전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고, 관상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는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와 관련 없이 저절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될 수 있으며, 단기간의 고혈압만 있는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망 당시의 망인의 업무내용과 그 근무형태만으로는 곧바로 망인의 택시운전사로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을 발병시켰다거나, 이를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1. 문제의 제기

최근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이하 ‘과로사’라 한다)하였음을 이유로 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직접적·의학적으로 재해의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재해가 증가함과 동시에 점점 많은 근로자가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재해가 ‘업무로 인한 것인가’의 문제는, 비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서만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사립 학교교원연금법 등에 의한 급여, 연금 등에 관한 소송에서는 물론이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공통적으로 소송의 핵심적 판단사항이 된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시행규칙이라든가 대법원의 판단기준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그것이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사안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망인이 수행했던 업무와 사망이라는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하에서는 과로사의 개념을 검토하고 아울러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분석·검토하여 실질적인 과로사의 인정기준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과로사의 개념과 특징

가. 과로사의 개념

과로사(Death From overwork)라는 용어는 의학용어가 아니라, 일반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이다¹⁾.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에 고혈압, 위궤양 등의 진단명은 사용

1) 일본에서 1969년 29세의 신문발송부 사원이 뇌졸중으로 사망하자, 이를 직장돌연사(occupational sudden death)라고 부르면서 업무와 관련된 사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5년 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는데 이것을 최초의 과로사 사례로 보고 있다. 과로사라는 용어 자체는 1982년 3명의 의사가 저술한 과로사(かろうし)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처음 사용되었고, 1991년 과로사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처음으로 신문에서 과로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과로증이라는 병명은 사용하지 않는다.

과로사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생체리듬이 깨져 생명유지 기능이 파괴된 치명적인 극한상태를 말한다. 피로의 축적 즉, 과로로 인해 발생된 뇌, 심장의 질환, 주로 뇌출혈,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심근경색, 급성심부전 등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심한 장해상태에 빠져 죽은 것과 달리이 없는 상태도 과로사라는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²⁾.

과로사가 발생하는 과정은 ① 과중한 육체노동, 장시간 임업, 야간 심야노동 등 의 생체리듬에 반하는 노동이나 과중한 책임부담, 단신 부임, 의사에 반하는 근무자 전환 등의 스트레스에 따른 부담이 피로를 축적하고, ② 또 이러한 과중부담에 수반하는 수면리듬의 혼란이나 여가의 감소, 과잉음주, 흡연, 식습관의 변화, 가정생활의 혼란 등도 피로의 축적을 증가시킨다. ③ 그러면 같은 과중부담이 대뇌피질에 자극을 주고, 교감신경 및 부신의 작용에 의해 체내 호르몬분비가 변화되어 자율신경계나 내분비계의 긴장을 가져오며, ④ 이들이 혈압 상승, 지질대사의 이상을 일으켜 동맥경화의 촉진, 혈전 형성, 심근경사 장해, 부정맥 유발 등을 초래하고 ⑤ 그 결과 뇌출혈, 뇌동맥류 파열, 뇌경색, 급성 심부전 등의 증상이 발증되어 과로사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나. 과로사의 특징³⁾

① 과로사는 어느 특정의 직종이나 업종에서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고, 극히 광범위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유기용제중독이 유기용제와 접촉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피로의 축적이 격화되는 사무·판매·운송·통신 서비스업 등 직종·업종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다.

② 종래의 직업병은 특정의 위험유해물질과의 접촉 혹은 특정의 건강에 유해한 작업기구의 사용이나 작업환경에 의하여 발생한 증세이고, 피재근로자는 말단의 현장근로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과로사는 말단의 현장근로자뿐만 아니라, 신문

2) 과로사라는 죽음은 어떤 증상이 시작되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 정의가 아닌데 반해, 급사 및 돌연사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이 죽음에 이르는 경과가 속히 진행된 것을 표현한 죽음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있어서는 과로사가 급사 또는 돌연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사, 돌연사 및 과로사가 혼동된 속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 돌연사의 유인중 가장 많은 비중(우리나라의 경우는 40%)을 차지하는 것이 과로이다. 따라서 과로사라 하면 마치 돌연사를 연상케 한다.

3) 이달걸, 과로사에 관한 고찰, 노동법과 사회정의.

기자교사로 있는 전문직이나 기술직 혹은 과장·계장으로 있는 중간관리직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다.

③ 연령별·성별에 대한 특징으로서, 과로사는 중·고령근로자 그것도 남성근로자에 집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병은 유해위험물질에의 접촉이나 건강에 해로운 작업환경하에 있었던 조건만 있다면,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과로사는 피해근로자의 연령이 중·고령이고, 남성에 집중하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④ 과로사는 병명이 아니고 그것을 야기한 직접적 기초질환에 관한 문제이고, 현재에서는 주로 급성순환기계질환(뇌혈관질환·허혈성심질환)이 문제로 되고 있다. 이 질환은 특정의 위험유해물질이나 작업기구 등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 근로, 심야근로, 불규칙근로, 잔업과다 등의 인간의 생리적 리듬을 교란시키는 근로 또는 직무에 있어서의 과중책임이나 트러블 등으로 야기되며, 이는 대개 근로자의 생명유지기능의 파괴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⑤ 주로 과로사의 기초질환인 급성순환기계질환은 알콜, 담배로 대표되는 기호품의 영향이나, 고혈압증세 혹은 사생활영역에 대한 피로 등 근로관계상의 위험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증세이기 때문에, 당해 기초질환만으로 시야를 한정한다면 과로사라는 용어의 사회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즉 오늘날 급성순환기계질환이 아닌 과로사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정착된 것은 그 용어가 확실히 현대사회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생활조건의 자세와 그 문제성을 명백하게 지적한다고 말할 수 있다.

⑥ 과로사를 야기하는 요인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근로자의 일(업무, 직업)의 자세 중에 잠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로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어서 소위 타율적 근로에 의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고, 일면에서는 과중노동에 의한 피로의 축적이 근로자의 직업관, 사는 보람 혹은 책임감이라고 말하는 내면적 동기에 의해서도 초래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복잡·심도가 있다.

3. 과로사의 인정기준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노동부 예규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의하여 좌우되나, 행정소송 단계에 이르면 위 노동부 예규는 행정부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법률의 해석에 의한 판단을 하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일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4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것을 요한다.

가.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기준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의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노무제공을 하는 자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등). 이 경우 노무제공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상관없고,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의 형식을 빌린 것이라도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하에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근로자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나. 업무상 재해의 요건

어떤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업무수행중의 것이어야 하고(업무수행성), 또한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업무기인성). 과로사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성의 문제보다는 업무기인성의 문제가 주로 쟁점이 되어왔다.

(1)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즉 지휘·명령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으면 족하고 직접 관리하에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39087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25851 판결 등) 또는 그 업무의 준비 행위(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034 판결 등)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

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과로사에 관련된 많은 사례를 보면 업무를 마친 후 회식석상에서 또는 퇴근 후 집에서 취침중이거나 목욕도중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업무 수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에 있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재해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⁴⁾

(2) 업무기인성

(가) 의의

업무기인성이라 함은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인과관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당해 재해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을 기회로 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설(기회원인설),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설(조건설), 경험법칙상 당해 업무에는 당해 재해 등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상당인과관계설), 재해에 대한 다수의 원인조건이 경합하고 있을 때, 그러한 조건들 가운데 결과 발생에 대하여 최유력한 것을 선택하여 그것만을 원인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자는 설(최유력원인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조건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험법칙상 당해 업무에 당해 재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재해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는 주관적 요소를 제외한 객관적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한다는 상당인과관계설이 통설이다⁵⁾.

4) 대법원 1986.9.23. 선고 86누176 판결 : 고혈압의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그의 평상 업무내용에 비하여 질적, 양적으로 정도가 현저하게 지나친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로로 지병인 위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한 뇌혈관 장해로 사망한 것이라면 그의 사망과 업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뇌혈관 장해발생의 원인이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로에 있었던 이상 그의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위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데 지장이 될 사유가 못된다.

(나) 노동부예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의 성질이나 범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3]에 업무상의 질병의 범위가 유형별로 규정되어 있고, 그 동안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노동부 예규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1981. 5. 7. 노동부예규 제28호로 제정되어 수회의 개정을 거쳐 1994. 7. 21. 노동부예규 제247호로 개정되었다)을 행정관서에서 일응의 판단기준으로 삼아오다가, 1995. 4.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위 인정기준의 대부분이 위 시행규칙에 흡수되었다.

위 시행규칙에서는 '재해'를 사고 또는 유해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사망, 신체장애 또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1호), 제32조~제39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과로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제33조 업무상 질병)는 원칙을 규정하고, 그 인정 기준을 제39조 제1항의 별표 16)(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

5) 이기현, 업무상 재해의 인정, 사법논집 17집.

6)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홍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 별표 1의 기준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기준을 근거로 할 때 과로사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질환의 발생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의하였거나 또는 ‘만성적 과로’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란 ‘돌발적인 자연현상과 화재 등의 비상사태로 긴장, 흥분, 공포 상태에 돌입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로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대부분 만성적 과로로 인한 경우이다.

위 시행규칙은, 일시적으로 급격히 업무하중이 가중되지 않는 일상화된 과중노동은 과로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과중부하에는 근로자 개인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업무상의 인정에 있어서 어떻게 고려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지만, 노동부가 내리는 유권해석의 기준이 되고 또한 실무상의 지침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 판례⁷⁾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984 판결,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도 동지).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도, 과로가 재해에 어느 정도 기여하여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가, 즉 재해가 근로자의 과로와 기존 질병 등 다른 원인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과로가 다른 원인과 함께 단순한 공동원인이 되었다는

7)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판례, 특히 최고재판소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하급심도 노동성노동기준국장의 통달(여러 가지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것만으로 족한가(공동원인설), 아니면 다른 원인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을 요하는가(상대적유력원인설), 질병에 대한 다수의 원인이 경합하고 있을 때 업무가 다른 원인들 가운데 필연적인 것, 최종적인 것, 최유력한 것 이어야 하는가(최유력원인설) 하는 문제가 논의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라거나, “이 사건 원고의 상병은 위와 같이 업무 수행 중 벤젠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고 하고 있으며, “당인에 대한 패혈증의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발병 직전의 계속된 공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패혈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경험칙상 상당하다”(대법원 1992.7.24. 선고 92누5355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 판례의 주류는 질병의 직접적이고 주된 발생원인이 따로 있고, 과로는 간접적, 부수적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공동원인설의 입장에 있다고 보인다.⁸⁾

(라) 과로와 질병⁹⁾

판례는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8) 이와 달리 상대적유력원인설을 취하면서 대법원이 근로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강도높게 과로하였다는 점에 관한 판시를 빠뜨리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상당인과관계설 중 상대적유력원인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길기봉, 과로사의 법률적 고찰, 법률신문 제2220호, 93.05.).

9) 과로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유형은 ① 과로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② 과로와 기왕증 등의 사유가 중첩하여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③ 기존 질병이 있었는데, 과로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보다 기왕의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로에 취약하다는 상식을 확인시켜준 결과이고, 법원이 기왕증의 존재 그리고 기왕증이 과로와 더불어 새로운 질병발생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과로와 유발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은데서 나온 결과라 할 것이다.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과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도,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과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다만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는 과로가 그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판례는 위암¹⁰⁾, 폐암¹¹⁾, 신장암¹²⁾, 백혈병¹³⁾, 췌장암¹⁴⁾, 대장암¹⁵⁾ 등의 각종 암에 대하여는, 그 질병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그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업무상의 과로와 무관하거나, 그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여,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¹⁶⁾

한편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인데,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밝혀져야 하는 등 그 의미를 좀더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다.¹⁷⁾ 즉 의학적인 견지에서 기존 질병의 자연적 진행 속도는 어떠한데, 이 사건의 경우 그보다 더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적 진행 속도나 그 이상의 급격한 악화에 대하여도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데, 그 소견 역시 단순히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소견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임상학적으로 통상의 경우 5~6년이 경과하여야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이 사건의 경우 2년만이 진행되었다는 등으로 소견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재 의학계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의학계에 종사하는 자신들도 숱한 임상경험과 연구를 통하여도, 자연적 경과로서의 악화인지, 아니면

10)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1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누408 판결.

12)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964 판결.

13)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2004 판결.

1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2129 판결.

15)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6565 판결.

16) 그러나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 업무와 폐암(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백혈병(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등의 암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17) 예를 들면 독일의 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로 인한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 그것이 추정수명연수를 약 1년 정도 단축한 것인 때에는 재해가 실질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자연적 경과 이상의 악화인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의학적 지식이 전문가들만큼 도달하지 아니한 법관들이 도대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자연적 경과 이상의 악화라고 단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고 있다.

4. 입증책임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그런데, 근로자측에서 과로사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자칫 재해보상을 통한 근로자 보호의 목적이 형해화될 우려도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인과관계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¹⁸⁾

5. 과로사에 관한 판례

과로사에 관한 판례가 너무 방대하므로, 여기에서는 대상판결과 유사한 직업이 운전사¹⁹⁾이고, 사인이 심근경색²⁰⁾ 등 심장질환 질병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8)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위 판결은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 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과로로 인한 인과관계 인정의 제한범위도 밝히고 있다.

19)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유해요인은 세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① 재해성 성격을 지니는 돌발사태로 인한 과중부하(택시운전사가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를 당할 뻔한 경우, 갑작스러운 공포감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과중부하를 받지 않았으나, 심리적으로는 매우 큰 부담을 받게 되어 의학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질병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 ② 일시적 과중부하(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업무의 과중부하로서 그 자체의 과중성으로 인한 급성적 영향을 보이는 경우), ③ 만성적 과중부하(평상시와 다른 업무의 과중부하가 영향을 미쳤다

가. 과로사 인정례

(1) 1990. 2. 13. 선고 89누6990 판결

[사실관계] 망인은 1988. 10. 10.부터 부평화물자동차 (주)의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산소통 운송작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89. 1. 1.부터 같은 달 3.까지 연휴로 보내고, 같은 달 4. 아침 일찍 출근하여 8:00부터 60Kg 산소통 73개를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인부 2명 등과 함께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40여개 정도 상차하였을 때, 망인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 망인은 평소에도 개당 50 내지 60Kg 이상되는 산소통을 운송보조자 1명과 함께 굴려서 상차한 다음, 기흥에서 목적지인 서울까지 하루 2-3차례 왕복하였고, 더구나 산소통을 하차할 때는 충격으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하여, 보조자가 밑에서 받아주거나 고무판을 깔고 조심스럽게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하차 및 운송작업을 매일 2-3차례씩을 반복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로서 그로 인하여 상당한 피로가 누적되었고, 사고당일은 날씨마저 매우 추위 보통 건강한 사람도 노천작업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함, 망인은 질병도 없었고, 다만 연휴기간 동안 친구들과 어울려 상당한 음주를 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는 못함

[판단]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은 평소 누적된 과로와 연휴동안의 과도한 음주 및 혹한기의 노천작업에 따른 고통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를 일으킨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2) 1990. 11. 13. 선고 90기 보다는 일상적인 업무의 특성상 업무 그 자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운전작업, 교대작업,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야간작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누3690 판결

20)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날라다주는 관상동맥의 일부가 막혀, 혈류가 중단됨으로써 그 부분의 심장의 벽, 즉 심근이 썩는 병이다. 주된 원인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로 인한 협착이나 폐색으로, 고혈압, 비만, 흡연 등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혀혈성 심질환의 증상이 발현될 수 있고, 이에 의한 혀혈손상으로 심근경색, 이에 따른 부정맥 등의 병발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경과로는, 협병되는 부정맥에 의한 급사를 초래할 수도 있고, 괴사심근의 크기에 따른 심한 심부전증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으며, 괴사심근의 범위가 작고 합병증이 없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사실관계] 망인은 서부관광운수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매일 06:00에 출근하여 22:30까지 16시간 30분 동안 버스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2 내지 3일을 연속근무한 뒤 1일을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 1988. 2.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3일간 연속 근무를 하고, 같은 달 22.은 휴무한 뒤 같은 달 23. 오전 06:00에 출근하여 약 8.5Km 거리까지 40분간 버스를 운전하여 왕복하던 중 신체에 이상을 일으켜 버스를 바로 정차시키지 못하고, 그 버스운전대에 엎드려 있다가 내려오면서 두번 구토를 하고 비틀거리며 영업소 운전기사 대기실에 들어가서 의자에 기대어 앉아있던 중 같은 날 오전 07:00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었고, 위와 같이 버스운전기사로서 1일 16시간 30분의 장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이고, 특히 3일을 연속근무한 경우에는 1일을 휴무하여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음

[판단]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하게 된 것은 평소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을 요하는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3) 1998. 5. 22. 선고 98두4153 판결

[사실관계] 망인은 1996. 2. 9. 평강운수에 화물차운전사로 입사, 1주일에 6일 정도 화물운반업무에 종사, 주로 11.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도, 충청도 일대의 깊은 산중의 벌목장에서 인천 등 대도시 벌목하치장으로 벌목을 운송, 벌목 상차작업은 낮에 이루어지지만, 낮시간에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제한으로 운송작업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아침 6시경 원주에 있는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비포장 도로를 이용하여 강원도 산간지역의 벌목장에 도착, 낮 시간에 벌목을 상차, 망인은 상차 작업시 대기하면서 새우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하나, 그 상차 작업을 돋기도함. 상차를 마치면 트럭을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고 원주로 돌아오는데, 그 운전은 장거리 운행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야간 운전이 포함되었고, 새벽 2시나 3시경에 귀가하거나 밤샘운전도 잦았음, 망인은 사망 전날에도 20:00 경까지 근무, 그 다음날인 1996. 8. 24. 06:00경 집을 나와 원주에서 트럭을 운전 하여, 영월 소재 벌목장에 08:30경 도착, 그곳까지 운전하는 동안 이미 눈이 어두워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여, 역지로 차를 운전하여 왔다고 호소, 도착 후 상차

작업 중에 구토를 하며 몸이 아픈 증세를 보이다가, 14:00경 식은 땀을 흘리며 몸이 좋지 않아 제천병원으로 후송하여 18:10경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사망, 사망원인은 돌연사 증후군으로 추정

[판단] 망인의 위와 같은 운전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생체리듬의 파괴와 체력의 과도한 소모로 피로가 누적되는 등 업무상 과로 이외에는, 다른 급사의 유인이 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4)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사실관계] 망인은 1952. 7. 5.생, 1997. 12. 15.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로, 1주일 단위로 오전조 또는 오후조로 번갈아 가며 근무,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30분 내지 10시간 15분 정도, 식사시간 외에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5분 간격으로 편성, 지연운행 등의 경우에는 그 휴식조차 취하지 못하고, 다음 운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운행구간의 도로폭은 8 내지 20m, 운행구간 중 주택가나 좁은 도로로서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구간이 있음, 평소 월 26, 27일 정도 근무, 사망한 날이 속하는 1998년 5월에는 21일 중 20일 근무, 그 중 2일은 오전조로 출근하였다가 오후조를 마칠 때까지 계속 근무, 망인은 같은 달 22일 00:00경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동료기사 3명과 소주 등을 나누어 마시다가, 03:00경 흉부 통증을 호소하다가 실신, 병원 이송되었으나, 05:33경 사망,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추정

[판단] 원심 - 망인이 사망할 시점에 인접하여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고, 소외 회사의 버스노선은 운전하기에 특별히 어려운 곳으로 보이지 않으며, 근무 여건상 망인에게 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대법원 - 망인의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반면에, 휴식시간이 짧고, 휴무일도 적으며, 특히 사망한 달에는 휴무일이 하루뿐이었던 점, 망인이 운행한 구간의 특성상 비교적 주의집중과 긴장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5) 2002. 10. 11. 선고 2002두4747 판결

[사실관계] 망인은 서광교통 소속 택시운전사로 종사하던 중 1999. 12. 16. 새벽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 망인은 1951. 10. 20. 생으로서(사고 당시 48세 1월 남짓) 1997. 8. 1. 경 소외 회사에 입사,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1일 2교대로서, 오전반은 매일 06:00부터 15:2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오후반도 같다), 오후반은 16:00부터 다음날 01:20까지 각 근무하되, 근무반별로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한 다음, 오전반은 오후반으로 오후반은 오전반으로 각 근무시간을 바꾸어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 시간동안만 유행할 경우, 사납금(1999. 11. 30. 까지는 1일 58,500원, 1999. 12. 1. 부터는 1일 62,000원) 이외의 수입을 올리기가 어려워 그 이상의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음, 특히 1998년경 IMF 여파로 인한 택시승객의 감소로 인하여, 소외 회사 택시운전사들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망인은 월급(1999. 2~11. 사이의 위 망인의 월 급여는 최저 654,156원, 최고 937,214원이었다)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사납금 이외의 초과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하루 2~3 시간 정도씩 연장근무, 1999. 5. 경부터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때까지 즐겨 다니던 등산도 가지 아니하고, 식욕이 부진해져 체중이 82kg으로서 소외 회사에 입사할 무렵의 몸무게보다 7kg 정도나 줄어들었고, 또 한 평소 근무를 마친 다음에는 틈을 내어 망인의 처가 운영하는 세탁소 일을 도와주기도 하였으나, 1999. 10. 초순경부터는 위 세탁소에 나가지도 아니하였고, 같은 달 말경에는 잠을 자다가 코피를 흘리고 눈동자에 황달기가 보이며, 얼굴색이 검게 변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임, 망인은 위 사고일 전날 오후반 근무를 나갔다가, 몸이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평소보다는 빨리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 01:00경 귀가, 03:20경에는 구토와 혀구역질을 하더니, 03:30경 갑자기 의식불명상태에 빠짐,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 사체부검 아니함, 사인은 심장 돌연사로 추정

[판단] 망인이 생계를 위하여 하루에 9~10시간이 넘도록, 그것도 6일 단위로 근무시간 및 생활리듬이 정반대로 바뀌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대단히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망인이 평소 자주 피곤함을 호소하여 왔고, 사고일 수개월 전부터는 그와 같은 증상이

눈에 띄게 잣아졌던 점, 더구나 망인은 요추부 염좌 등 허리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힘든 운전업무를 수행하느라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리라고 여겨지는 점, 사고당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내인성 급사의 원인질환인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이 유발되었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그와 같은 질환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며, 사정이 그와 같다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6) 2002. 11. 8. 선고 2002두3829 판결

[사실관계] 망인은 1963. 6. 1.생, 1995. 10. 23. 충진교통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1999. 6. 25. 13:30경 근무를 마치고 교대하여 집으로 귀가한 다음 휴식을 취한 후, 잠을 자던 중 그 다음 날 05:50경 사망, 사망원인은 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 망인을 비롯한 충진교통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은 1일 2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오전근무는 05:50~07:00 사이에 첫차의 운행으로 개시하고, 교대시간은 14:00~15:00경이며, 오후근무는 23:30경 종료되며, 오전·오후 1주일 주기로 근무 교대하고, 망인은 오전근무일 때에는 새벽 4~5시경 출근하여, 오후 2~3시경 귀가하고, 오후근무일 때에는 낮 12시경 출근하여 밤 12시경 귀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날 오전근무조였는데, 06:33경 출발하여 편도 65분 정도 소요되는 코스를 운행한 뒤, 13:30경 근무교대를 하고, 15:00경 귀가, 망인은 평소 음주는 하지 않았고, 흡연은 하루에 담배 한갑 정도를 피움, 망인은 1999. 6. 4. 18:20경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출발하던 중 차내 의자에 앉아 있던 술취한 여자 승객이 버스 바닥으로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야기함, 충진교통에서는 그 소속 운전기사가 버스 운행 중 일으킨 대인사고에 대하여는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여 사고처리를 해주고는 있으나, 사고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당해 운전기사는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데 지장이 있고, 나아가 무사고수당 35,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승무정지처분을 받기도 함

[판단] 관상동맥경화증이 심근경색 발병의 한 원인인 점, 망인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1999년도에 들어와 심하게 피로를 느껴, 약 50회에 걸쳐 병원에서 피로회복제 주사를 맞기까지 한 점, 1999. 6. 4. 발생한 버스승객 부상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의 경우 동일한 업무나 외부 자극에

대하여 보통의 정상인보다 더 많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지속됨으로 인하여 관상동맥경화증이 악화된 나머지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7) 2003. 1. 10. 선고 2002두8145 판결

[사실관계] 망인은 1998. 9. 7.부터 영광운수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3. 25. 07:30경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운전석에서 엔진시동과 히터를 가동한 채 사망, 망인은 오전 근무는 03:30부터 14:00까지, 오후 근무는 14:00부터 다음날 03:30까지로 하는 1일 2교대제의 근무를 하였는데, 위 교대근무는 6일간 계속하여 오전 근무 또는 오후 근무만 하다가 6일 후에 다시 6일간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다른 근무를 하게 되며, 오전 근무에서 오후 근무로 교대가 바뀌는 매주 토요일 하루 쉬게 됨, 소외 회사의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는 규정상 휴게시간(식사 및 휴식시간 2시간 40분 정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 1주일에 44시간, 월 만근 일수 26일을 기준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 기본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운전 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또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행수입을 위하여, 초과근무를 하게 되어 통상 근무시간은 8시간 정도가 되며, 이에 따라 소외 회사 운전기사의 사납금은 69,000원이었으나 1대당 평균 입금액은 82,000원 정도임, 망인은 1일 평균 8시간 30분 정도 근무하면서(1일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에서 9시간 30분 정도) 230km 정도를 운행하였고, 1999년 3월의 사납금으로 평균 90,000원 정도를 입금하였으며, 사납금이 미달된 경우는 없었고, 망인은 1999년 1월은 총 25일, 1999년 2월은 총 23일, 1999년 3월은 22일을 근무함, 망인은 사망 전후를 통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등의 근무형태의 변동은 없음,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다른 영업용 택시회사 및 회사소속 운전기사로 9년간 일한 경력이 있음, 소외 회사에 근무할 때 건강진단을 받은 바 없고, 특별히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도 없이 건강하였으며, 술과 담배는 조금씩 함,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 추정

[판단] 망인이 비록 사망하기 직전에 통상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일을 하였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바가 없기는 하지만,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납금 및 추가 수입을 위하여, 규정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다른 택시기사들과 비교하더라도 다소 많은 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사납금 입금실적도 상위권에 속한 점, 망인은 택시기사로서 격주단위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 사회적 가정생활의 지장 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 1개월전부터 과로로 인한 피곤을 호소하여 왔고, 사고 전날에는 두통, 속메스꺼움 등의 증세를 호소하면서 약을 구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택시기사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망인의 사인을 위와 같이 심근경색증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돌연사한 망인에게 달리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또는 그러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도, 사망시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고, 망인에게 위와 같은 과로 이외에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제도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실시되는 절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가 누적되어 망인의 곁으로 드러나지 않은 기준질환이 유발하였거나,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나. 과로사 부정례

(1) 1998. 5. 22. 선고 98두4559 판결

[사실관계] 망인은 자영업을 하다가, 1993. 1. 8. 새한운수에 택시기사로 입사, 같은 해 9. 30. 퇴직, 1994. 1. 1. 재입사 1995. 4. 4.까지 근무, 1996. 2. 24.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 9. 6. 사망, 망인은 1995. 1. 1.경부터 1인 1차제(기사 1인에게 1대의 택시를 배정하여 기사는 하루 중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근무하여 일정한 사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금은 자기의 수입으로 삼는 제도)로 10일 근무 후 1일 쉬는 형태로 근무, 망인은 1996. 2. 24. 재입사 후 보통 16:00 ~ 17: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근무, 망인은 평소 건강한 편(건강진단에서 특별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음), 한편 망인은 1992년경부터 동료들과 화투놀이나 포커를 즐겨, 이로 인해 밤을 세우는 일이 많았음, 심장질환은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장질환을 악화시킬수 있음

[판단]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심장질환이 그 원인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도 망인이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경로로 심장질환이 발병하게 되었는지 등을 판별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점들과 망인의 근무내용이나 스스로 근무시간이나 근무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질환 나아가 뇌경색이 유발되었다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2000. 9. 8. 선고 2000두3283 판결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한 바 없고, 사체검안의사는 “외상 및 사고사의 흔적은 볼 수 없었고, 성인에 있어 급사의 가장 흔한 질환 중 심장 및 혈관 계통질환이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한 것이고, 임상경험으로 뇌졸증보다 심근경색증이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사망재해는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망하기 직전에 통상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일을 하였거나, 작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바가 없고, 11개월간 같은 업무를 하면서 평소 피로나 스트레스를 호소한 바도 없었음을 알 수 있고, 비록 택시운전사로서 격일제로 하루 15시간정도, 월 14일가량 근무하는 것이 다소 생체 리듬을 역행하고 매연에 노출되며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맷는 말

이상으로 운전직업에 종사하고 사인이 심근경색등 심질환인 개별사안을 중심으로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고찰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사망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대강 살펴보았으나, 판례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은 그 개념 자체가 명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테다가, 산업사회가 발전할수록 업무의 종류와 내용, 사고의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뿐 아니라, 전문, 세분화하는 경향에 있어 업무상 재해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대상판결은, 망인이 영업용 택시기사로 11년 8월간 종사하였고, 근무내용도 1일 2교대이며, 월 22~26일 근무하였고, 1일 운행시간은 10시간 정도이며, 평소 당뇨, 고혈압 소견이 있었고, 음주흡연을 하였으나, 정상적인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가, 사망 당일 집 앞에서 교대근무자로부터 택시를 인수하여 가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후송 도중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연령이 48세 11월이며, 부검결과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인데, 앞서 본 과로사로 인정된 다른 사례에 비하여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많아 심혈관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²¹⁾, 또한 대상판결은 사망 당시의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형태만으로는 곧바로 망인의 택시운전사로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을 발병시켰다거나, 이를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운전작업은 항상 시간에 쫓기고, 지속적인 긴장을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는 작업이므로, 돌발사태나 일상업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작업 그 자체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을 야기하거나, 질병의 악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점, 1주 단위의 주야 2교대작업은 1주 단위로 생체리듬과 생활리듬이 파괴되는 작업이므로, 생체리듬과 생활리듬이 맞지 않을 경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되어 그와 같은 근무형태 자체가 이미 만성적 과중부하를 가져오게 되는 유해 요인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 가능성이 높은 점²²⁾, 또한 망인이 매 근무시마다 사납금을 채우고 나아가 수입금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무리한 운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하였어도 될만한 사안인데, 굳이 원심판결을 폐기환송한 결론이 타당한가 의문이 든다.

21) 대법원의 전체 과로사 인정 사례 중 심장질환, 뇌질환, 간질환 등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와 같은 질병이 과로에 취약한 질병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있다.

22)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727 판결에서도 '망인의 경비업무 자체가 주야교대 근무형태로서 인간생리리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전업무의 경우, 운전자의 적성배치, 배치전 작업방법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작업 후 충분한 회복시간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완벽히 보호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특히 교대제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 할 수 있는 완벽한 교대제 운영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의 경우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가 없기는 하지만, 앞에서 본 과로사 인정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판례가 '제반사정' 을 고려해서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해 주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 이유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으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 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 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물론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인과관계를 인정 또는 추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 또는 악화시키는 유인으로 보고 있고, 교대제 택시운전 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특히 그 업무 자체에서 오는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다가, 망인의 경우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중에서는 경력이 많은 편으로, 그로 인한 심혈관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의 제공원인이 업무상 생활영역인지 사적인 생활영역인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없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심질환에 있어서 단정적으로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것 역시 의문이 든다.²³⁾

마지막으로 과로사는 노동의 질적변화나 생산관리강화 등으로 인하여 초래된 문제인데, 특히 교대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질병은, 통상의 업무와 달리 장기적인 진행과정을 거쳐 발병되기 때문에,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행위의 영향인가, 아니면 업무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건강조건에 의해서 발

23) 閔旼, 이영동,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한 제문제, 사법논집 37집.

생한 것인가의 판단이 쉽지 않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확인과 관련된 어려움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다고 경험칙상 인정되는 질병을 목록화하고, 이 목록에 열거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케 하여, 적어도 이 목록에 열거된 질병이 발생하면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여, 해당 질병이 명백히 업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형태로 법제화되어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abstract]

The recognition basis of overwork death

Nam, Keun-Wook*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a causal link between overwork and death particularly in the overwork company which its business standed on overworking. The deceased man in this case has a career, which is 10 years or more, and there is possibility to change to a cardiovascular disease.

This work has time pressure and needs continuous tension. In addition, this work causes mental stress and needs long period.

Even the condition is not sudden and is only routine work, but here are much passbilities to cause disease.

Organism and life rhythm are destroyed by changing the two shifts of work in two weeks. Consequently, the case where the organism and life rhythm will not be right, it causes physical and mental stress.

The work that is as this service form may cause a chronic fatigue syndrome to human's body; therefore, the occurrence of disease and possibility of getting worse is so high. Moreover, the deceased person worked not for certain time but works until having the mount of money the company limited for him. As a result, he had to drive more and more.

So we can come to the result that there is causal link between the deceased person and his overwork stress.

Keywords : overworking, disease by working, causal link on working, overwork and death, overworking and disease.

* College of Law, Yeungnam University